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 이유

구미시 도량동내 기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산 공원의 동측 하단부 평탄지 일부를 해제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함으로써 구미중학교내 부족한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린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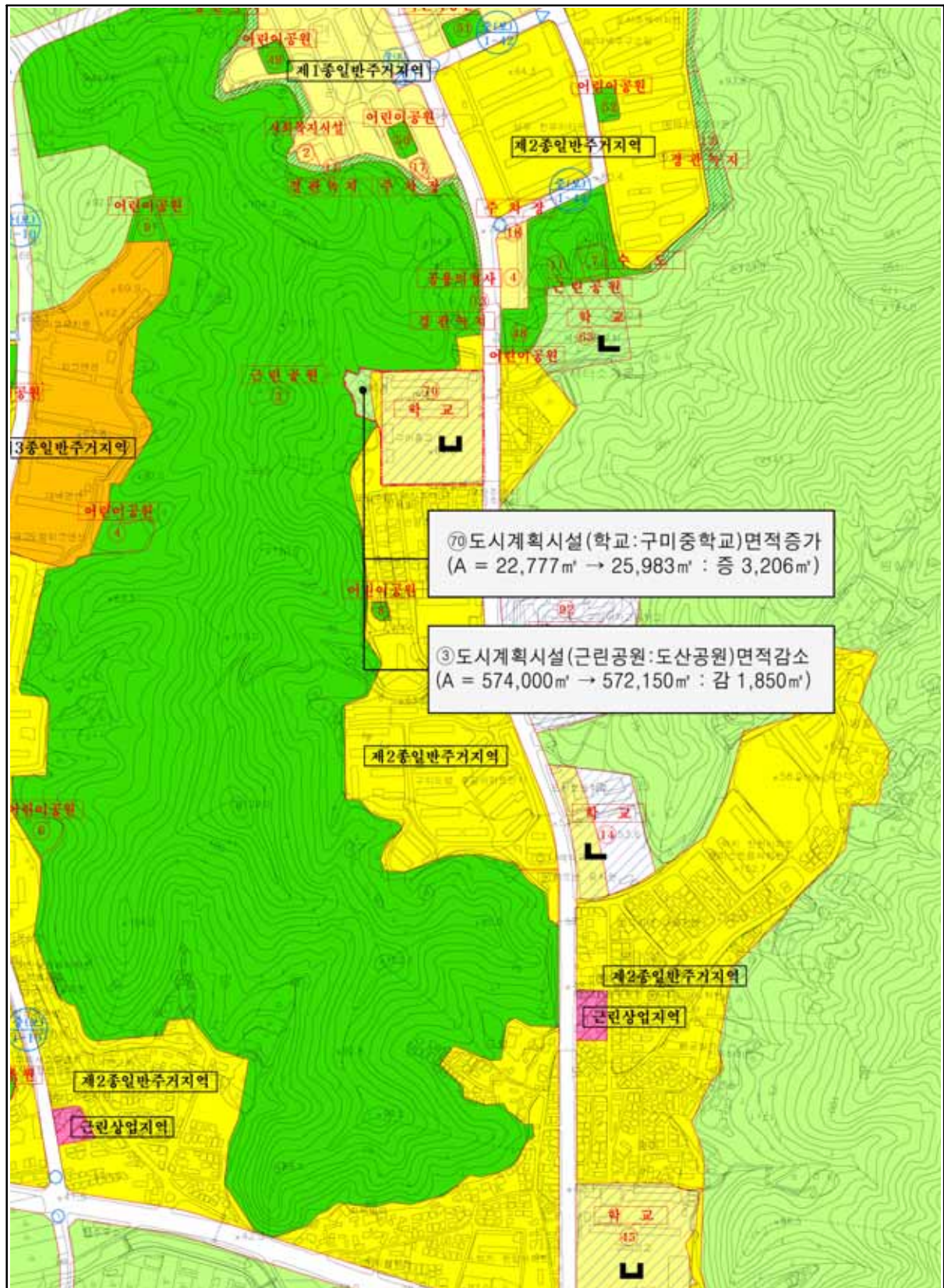
3. 주요 내용

- 사 업 명 : 구미중학교 시설부지 확장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도산공원	근린공원	도 량 동 산25일원	574,000	감)1,850	572,150	건교고제524호 (1973.12.31)	자 연 녹지지역

- 위 치 : 구미시 도량동 산25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다목적강당(지상 2층) 신축
- 사업 시행자 : 구미교육청
- 사 업 기 간 : 2006년 허가일로부터 ~ 2006년 1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4.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5. 검토의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산공원의 일부(1,850㎡)를 해제하여 구미중학교 시설부지(식당, 다목적 강당 등)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건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식당이 협소하여 학부형들로부터 원성을 사오던 교육청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임